

신고서

신 고 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

전화 02-774-4551, 이메일 truesig@jinbo.net

대표 오병일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 길 16(통인동)

공동대표: 한상희

서울 YMCA

서울 종로구 종로 69 서울 YMCA

전화 02-737-0061

대표자 : 조규태(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 종로구 동승 3 길 26-9

전화 02-765-9731

대표자 : 윤순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 길 74(서초동, 스탠다드빌딩)

전화 02-522-7284

대표자명 : 위원장 김하나

신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8층(서초동, 서희타워)

전화 02-3476-6002, 이메일 lit@jihyanglaw.com

담당 변호사 남상철, 박용대,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 박갑주, 김영주, 여연심, 김묘희, 노정연, 김기탁, 신유정,
전다운, 김예지

피 신 고 인

구글 LLC(GOOGLE LL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대표자 선다 피차이

신고사항

1. 신고의 요지

구글(Google LLC)은 최소한 2014년부터 ‘앱 및 웹 활동’의 설정을 자동으로 위치 수집 허용으로 설정해 놓고, 이용자에게는 위치 설정을 끄기로만 설정하면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는 등 이용자를 속여 왔고,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를

표적 광고를 통한 수익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40개 주 법무부 장관이 구글을 피고로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022. 11. 14. 3억9,2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위법한 관행의 시정을 하겠다는 합의를 하였고,¹⁾ 2022년 1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²⁾

이용자의 위치 정보는 구글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추적함으로써, 전례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글은 인구 통계, 습관 및 관심 분야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따라 각 이용자에게 표적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광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구글의 능력은 더 나은 광고 기능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구글은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 재정적 유인이 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을 거부하려는 경우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설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러한 설정에 대하여 모호하고 불완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는 구글이 자신의 위치를 수집, 저장 및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같은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 특히

1) “Forty Attorneys General Announce Historic Settlement with Google over Location Tracking Practices”
<https://www.njoag.gov/forty-attorneys-general-announce-historic-settlement-with-google-over-location-tracking-practices/>

2) <https://www.nytimes.com/2022/01/24/technology/google-location-services-lawsuit.html>

위치정보를 위법하게 수집·이용하여 그 광고수익 사업에 활용하는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 당사자

Google LLC는 주사무소를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3, USA에 두고, 온라인 광고 기술, 검색, 클라우드를 포함한 인터넷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Google LLC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한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2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 두고 있는 영리 기업으로서, Wi-Fi 및 기지국 기반으로 수집된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확인과 위치 기반 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자, 위치기반 지도표시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입니다.

이하에서는 Google LLC를 그 서비스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구글’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구글에 계정을 만들고, 그 앱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용자’로 통칭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용자의 위치기록은 수집된 양이 적더라도 개인의 신원과 일상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소속, 성적 취향, 소득, 건강 상태, 사회 활동 등 이용자의 행동적 특징을 알아볼 수 있고, 결혼, 이혼, 출산과 같은 주요 사건을 추론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위치기록은 특정 개인의 위치, 개인의 행동적 특징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신원과 일상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한 요건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한 적법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을 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4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9조의 3의 특칙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제2항).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인 경우(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그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다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방식과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그 주요 내용은 중요 사항의 명확하고 분명한 고지, 적극적인 동의 표시 행위, 필수 수집 개

인정보 외 선택 사항에 대한 별도 표시와 별도 선택에 의한 동의 등입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의 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39조의 3 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고지할 내용
수집, 이용시 (제15조 제2항)	수집, 이용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수집, 이용시 (제39조의3 제1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시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중요사항	표시방법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2) 동의의 방법과 선택적 동의 사항의 구분 및 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³⁾).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이 때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과 그 외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고(시행령 제17조 제3항), 그에 대하여 **각각 선택하여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

3) (i)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ii)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iii)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iv)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v)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vi) 그 밖에 위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체의 동의를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제22조 제3항)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4항). 그리고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도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2조 제5항).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한편,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시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미리 위치정보서비스의 내용,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등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제18조).⁴⁾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제공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19조).⁵⁾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있거나 요금정산, 통계작성이나 시장조사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위치

4)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20조).

5. 구글의 위법한 개인위치정보 취득에 대하여

가. 구글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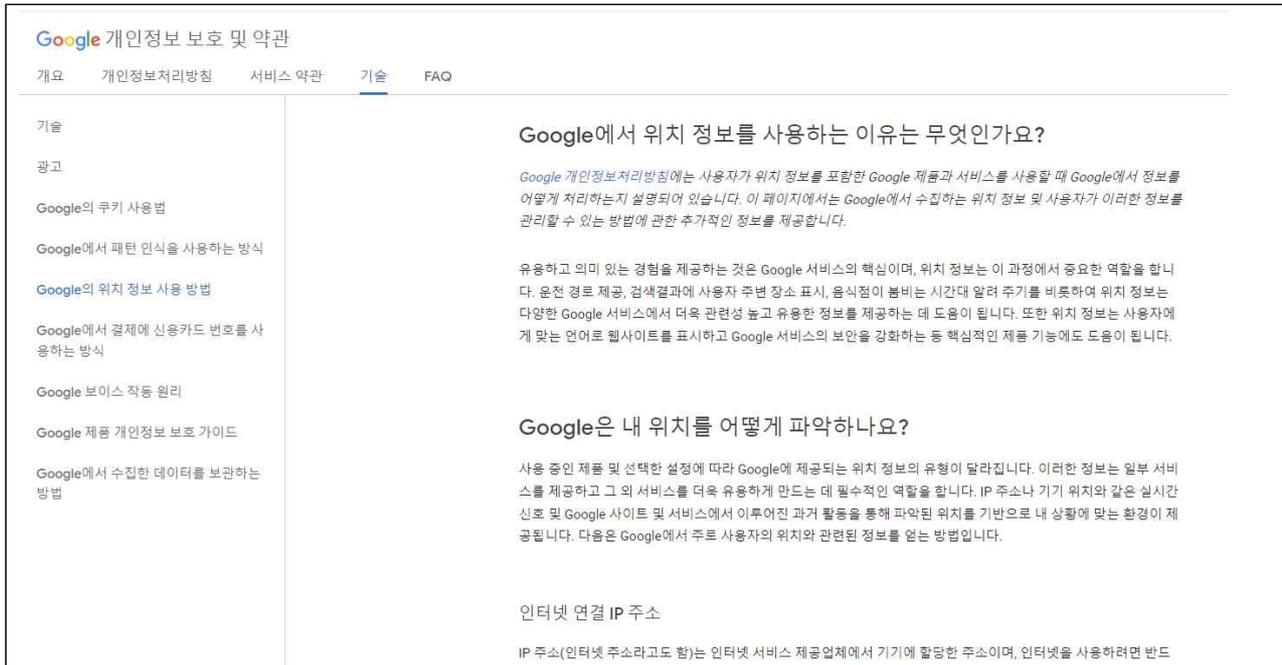
(1) 광고 사업을 위한 위치정보 사용

구글은 구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위치 정보는 구글 광고 사업에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글은 광고주에게 지역 타겟팅 및 위치 기반 분석을 통해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이용자의 위치 정보는 구글이 광고 사업에서 수익성을 갖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계속 부여하도록 만들 유인이 있습니다.

(2) 표적 광고에 위치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숨김

그러나 구글은 위와 같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표적 광고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Google 서비스의 핵심이며, 위치 정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 경로 제공, 검색결과에 사용자 주변 장소 표시, 음식점이 붐비는 시간대 알려 주기를 비롯하여 위치 정보는 다양한 Google 서비스

에서 더욱 관련성 높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치 정보는 사용자에게 맞는 언어로 웹사이트를 표시하고 Google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핵심적인 제품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적 광고에 활용한다는 설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구글의 위치정보 취득 방식

(1)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함

구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무료이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기기에는 대부분 구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라 합니다)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래밍 인터페이스(이하 ‘API’ 라 합니다)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 앱과 API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장치 제조업체(OEM)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이용자의 장치에 사전 설치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위치정보를 구글에 제공합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된 센서 및 API를 통해 GPS 좌표, 기지국 데이터, Wi-Fi 신호를 사용하여 기기의 정확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구글은 앱과 웹기반 서비스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이외에도, Google 검색, Google 지도, Chrome 웹 브라우저, YouTube, Google Play 스토어, Google 어시스턴트와 같은 웹 기반 서비스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앱 또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구글 앱 및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때 이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이러한 특정 구글 앱에는 이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태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위치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면, 구글은 이용자가 이를 기억해두고 그 수집 권한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합니다. 이용자가 위치 정보를 수집할 권한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구글 앱은 이용자에게 위치 관련 권한 설정을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위치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면,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를 계속하여 수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 구글 계정 및 안드로이드 기기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설정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보호하려는 경우, 구글의 계정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여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글 계정의 설정은 이용자가 구글 계정으로 이용한 모든 기기에 적용되고,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설정은 해당 기기에 대하여만 적용이 됩니다.

1) 구글 계정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설정

구글 계정의 위치정보 수집 및 사용은 ‘위치 기록’, ‘웹 및 앱 활동’, ‘개인맞춤 광고’의 세 가지 이상의 설정에 의하여 제어됩니다. 위치기록은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이용자가 이동하는 모든 장소를 수집,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지도를 구축합니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광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구글 앱과 상호작용할 때의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위치 기록과 웹 및 앱활동은 독립적인 설정입니다. 따라서 위치 기록을 비활성화로 설정하여도, 웹 및 앱 활동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글은 또한 개인맞춤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인맞춤광고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Google 사이트 및 앱을 사용하는 대략적인 위치 등 Google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신규 및 기존 활동’이 사용된다고 표시됩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개인



위치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위치 기록을 사용하면 로그인 상태의 휴대기기로 내 이동 경로에 대한 비공개 지도를 만들어 자동 통근 시간 예측, 향상된 검색결과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너뛰기 ●●●

맞춤 광고를 비활성화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용자가 개인맞춤광고를 비활성화하면,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용자가 개인 맞춤 광고를 비활성화하여도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한 광고를 제공합니다.

2)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와 관련한 설정

구글 계정의 위치 기록, 웹 및 앱 활동, 개인맞춤광고는 이용자의 구글 계정과 연결된 모든 기기에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용자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와 관련한 독립된 설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해당 기기의 정확한 위치를 앱 또는 서비스와 공유 여부를 제어

하는 ‘마스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마스터 스위치를 비활성화하면 안드로이드 기기의 앱 또는 서비스가 기기의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앱 별로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설정은 구글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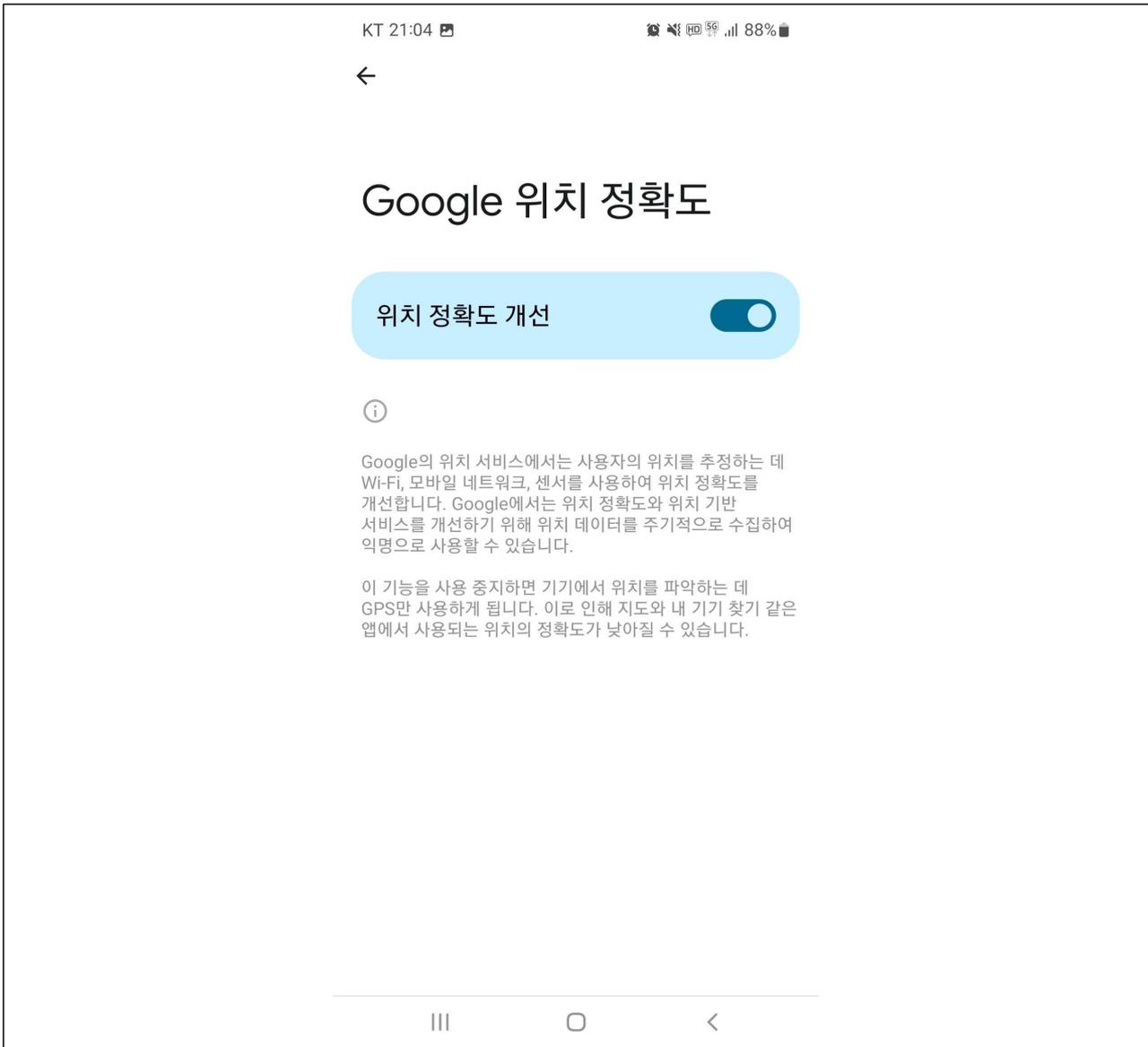
그러나 사용자가 마스터 스위치를 활성화하면, 구글은 자동으로 ‘구글 위치 정확도’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글 위치 정확도가 활성화된 경우, 구글은 사용자 장치에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일부 버전에는 이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Wi-Fi, Bluetooth, 셀룰러 신호, GPS 또는 Google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지 여부를 제어하는 ‘낮은 배터리’ 및 ‘높은 정확도’ 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이처럼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제어하기 위한 설정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용자는 위와 같은 각 설정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는 설정을 비활성화하였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라. 구글은 사용자가 착각에 빠지도록 위치정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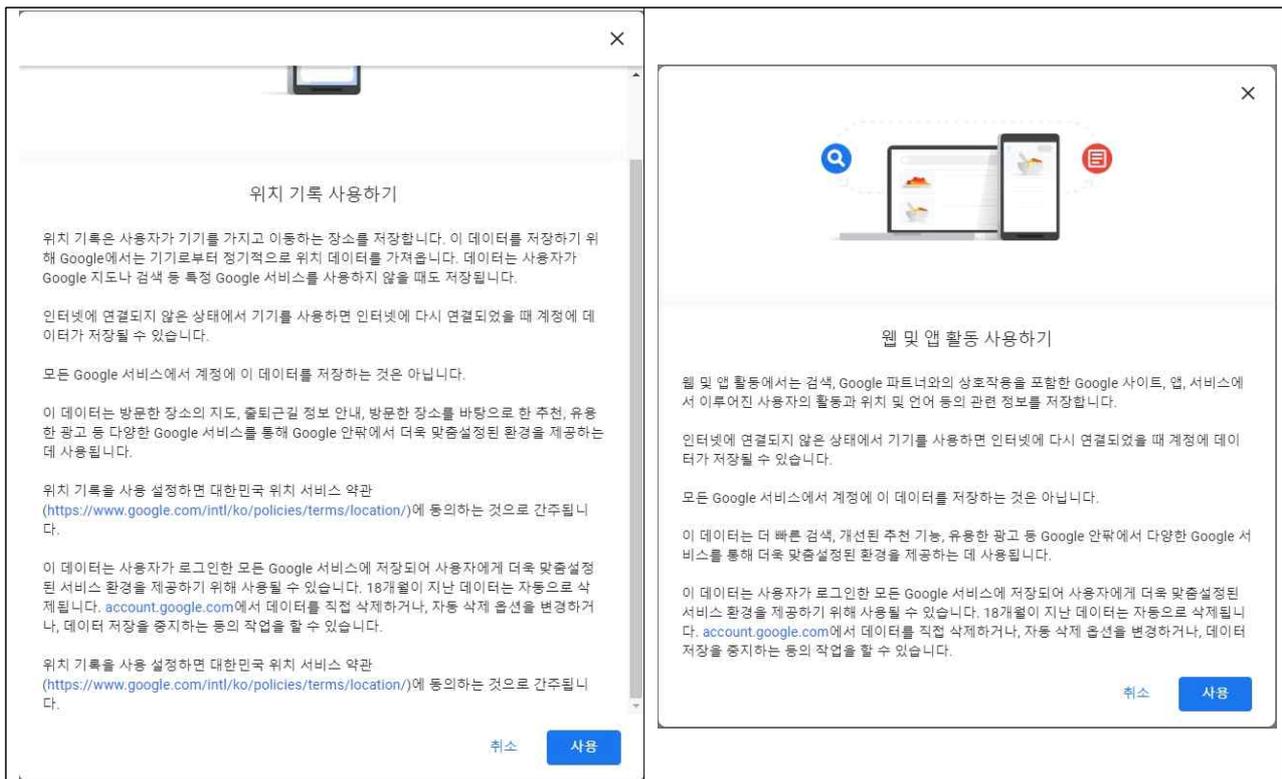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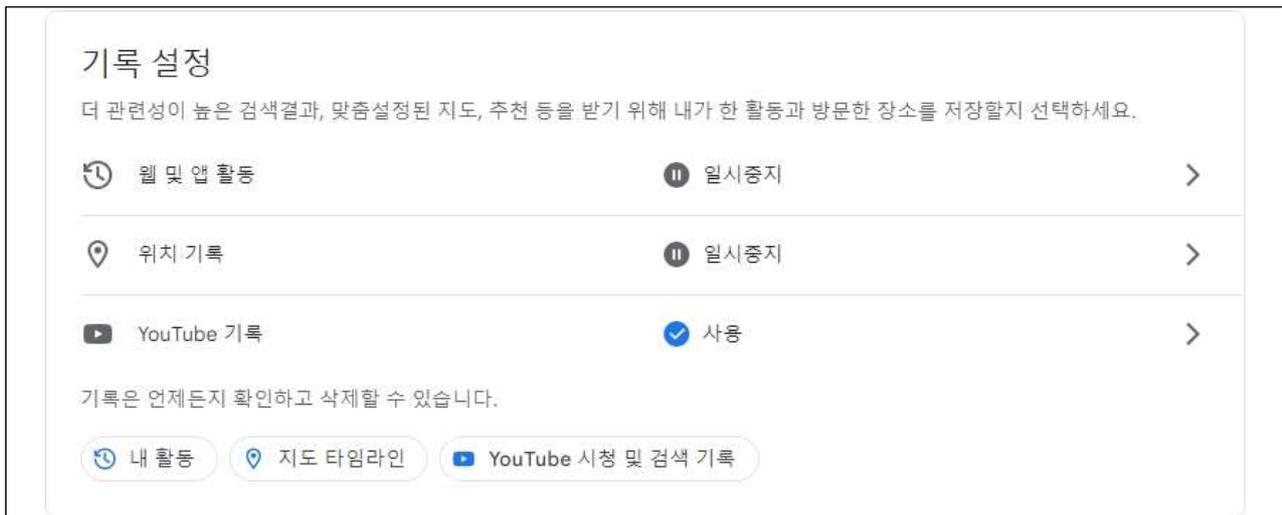
1) 위치기록 설정과 관련하여

구글은 이용자에게 “위치 기록”을 사용 설정하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위치 기록” 설정만이 구글에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제공 여부를 제어하는 것처럼 암시를 줍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용자가 위치 기록을 활성화하면, “특정 Google 서비스를 사용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기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장소를 저장하여 맞춤설정된 지도, 방문한 장소를 바탕으로 한 추천 등을 제공합니다”, “위치 기록은 사용자가 기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장소를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Google에서는 기기로부터 정기적으로 위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위치 기록’ 이외에도 웹 및 앱 활동, 이용자 장치의 구글 앱, 이용자 장치의 Wi-Fi 및 Bluetooth 스캔, 위치 정확도 기능, 이용자의 IP 주소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였습니다. 구글은 웹 및 앱 활동이 활성화된 경우 회사가 위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구글 계정에서 “위치 기록” 설정만으로 구글의 이용자 위치기록 저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2) ‘웹 및 앱 활동’ 과 관련하여

구글은 ‘웹 및 앱 활동’ 설정으로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숨겼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계정을 처음 설정할 때 웹 및 앱 활동 설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 다. 웹 및 앱 활동 설정은 새 구글 계정에서 ‘동의’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계정을 처음 설정하는 이용자는 구글의 웹 및 앱 활동을 통한 위치 추적에 자동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휴대폰에서는 이용자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구글 검색 및 지도와 같은 앱에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비동의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기존의 구글 계정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기를 설정할 때에도 웹 및 앱 활동에 관한 설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 다. 이용자의 웹 및 앱 활동에 대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상태는 이용자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모든 기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구글 계정에서 웹 및 앱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 구글은 이용자가 기존 구글 계정으로 새로운 기기에 로그인할 때마다 해당 장치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웹 및 앱 활동 설정에 대한 언급도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18일자 버전의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구글이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의 예시를 링크로 연결해두었습니다. 그 예시에 의하면, 구글은 “위치 기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고 위치 정보 전송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모든 기기의 위치 기록 데이터가 Google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설명되어 있고, 웹 및 앱 활동 설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

니다.

Google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개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약관
기술
FAQ

<p>개인정보처리방침</p> <p>데이터 전송에 관한 제도</p> <p>핵심 용어</p> <p>파트너</p> <p>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p> <p>업데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기기 이벤트 정보(다운, 시스템 활동, 하드웨어 설정, 브라우저 유형, 브라우저 언어, 요청 날짜 및 시간, 참조 URL) 사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Google 계정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쿠키 <p>• 위치 정보</p> <p>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할 때 Google에서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IP 주소, GPS뿐 아니라 주변 기기, Wi-Fi 액세스 포인트, 기지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센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합니다.</p> <p>•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번호</p> <p>일부 서비스에는 고유한 애플리케이션 번호가 포함됩니다.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또는 자동 업데이트 요청 등을 위해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Google 서버에 연결할 때 이 번호 및 운영체제 종류, 애플리케이션 버전 번호 등 설치 관련 정보가 Google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p>
--	---

← → ↻ 🏠 policies.google.com/privacy/example/may-collect-and-process-information?hl=ko

🇰🇷 국가별정보센터 🌐 전자소송 🔄 로연비

Google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개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약관
기술
FAQ

<p>개인정보처리방침</p> <p>데이터 전송에 관한 제도</p> <p>핵심 용어</p> <p>파트너</p> <p>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p> <p>업데이트</p>	<p>이 내용은 보관처리된 버전의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음'</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를 들어 Google 지도는 지도 뷰의 중심을 현재 위치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oogle 모바일 지도를 사용 중인 경우 Google은 GPS, Wi-Fi, 기지국 신호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 근처에 있을 때에는 Google Now가 다음에 도착할 버스나 기차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위치 기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Google 계정에 로그인하고 위치 정보 전송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모든 기기의 위치 기록 데이터가 Google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록 및 위치 정보 전송 데이터는 모든 Google 앱 또는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 지도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내가 간 적이 있는 장소를 기반으로 검색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

3) '개인맞춤광고' 와 관련하여

구글 개인맞춤광고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Google 사이트 및 앱을 사용하는 대략적인 위치 등 Google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신규 및 기존 활동’ 이 사용된다고 표시됩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개인맞춤광고를 비활성화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위치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용자가 개인맞춤광고를 비활성화 하는 경우에,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용자가 개인맞춤광고를 비활성화하여도 여전히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를 제공합니다.



마.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설정에서 이용자를 기만합니다.

구글은 이용자에게 안드로이드 기기 설정에 있는 ‘마스터 스위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글은 Google 라이선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폰에 ‘마스터 스위치’ 설정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마스터 스위치’를 이용하여 기기의 위치 정보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휴대전화에서 위치를 사용 중지하면 앱과 서비스에서 휴대전화의 위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IP 주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 검색결과와 광고는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도움말 페이지를 제공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마스터 스위치에 관한 설명은 이용자가 마스터 스위치를 이용하여 위치 설정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구글이 더이상 ‘서비스(광고 포함)’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위치를 수집, 저장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암시를 줍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용자가 마스터 스위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비활성화하여도 이용자의 IP 주소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 위치 관리 > Android 기기의 위치 설정 관리

Android 기기의 위치 설정 관리

설정에서 위치를 사용 설정하면 휴대전화의 위치를 기반으로 통근 상황 예측 및 주변 레스토랑 검색 등 향상된 지역 검색결과와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 일부 단계는 Android 12 이상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droid 버전 확인 방법 알아보기](#)
- 일부 단계에서는 화면을 터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설정 이해하기

중요: 휴대전화에서 위치를 사용 중지하면 앱과 서비스에서 휴대전화의 위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IP 주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 검색결과와 광고는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 **Android 기기의 Google 위치 정확도(Google 위치 서비스라고도 함):** 더 정확한 휴대전화 위치를 가져오려면 [위치 정확도 관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 **Android 기기용 긴급 위치 서비스:** [Android 긴급 위치 서비스 관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 **Android 기기용 지진 알림:** 휴대전화로 주변에서 일어난 지진에 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지진 알림 관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 **Android 기기에서 시가대 위치 사용:** 위치를 기반으로 시가대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시가대 위치](#)

내 위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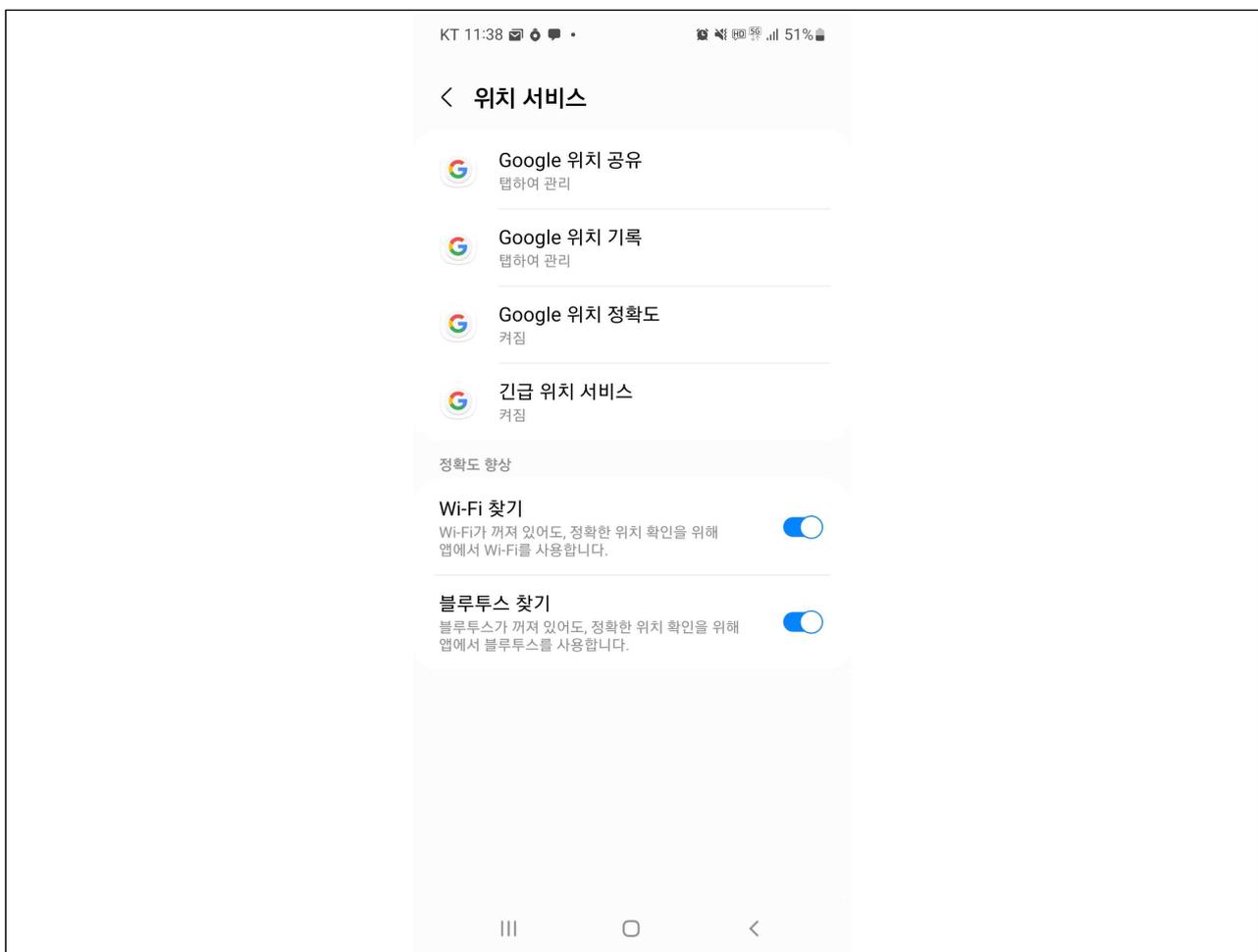
- 위치 기록 관리하기
- iPhone 및 iPad에서 위치 기록 관리하기
- Android 기기의 위치 설정 관리**
- Android 휴대전화의 위치를 사용할 앱 선택
- 위치 공유 설정 관리



Visit the Google Account Learning Center

또한 구글은 Wi-Fi 및 Bluetooth와 같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특정 위치 신호와 관련된 장치 설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Wi-Fi 스캔을 사용하여

기기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는 위치서비스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Wi-Fi 찾기’, ‘블루투스 찾기’ 설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 이 사용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Wi-Fi 및 Bluetooth를 비활성화하더라도, ‘Wi-Fi 찾기’, ‘블루투스 찾기’ 기능은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여전히 이용자의 기기에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바. 구글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한 인터페이스(다크패턴)를 설계하였습니다.

다크 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은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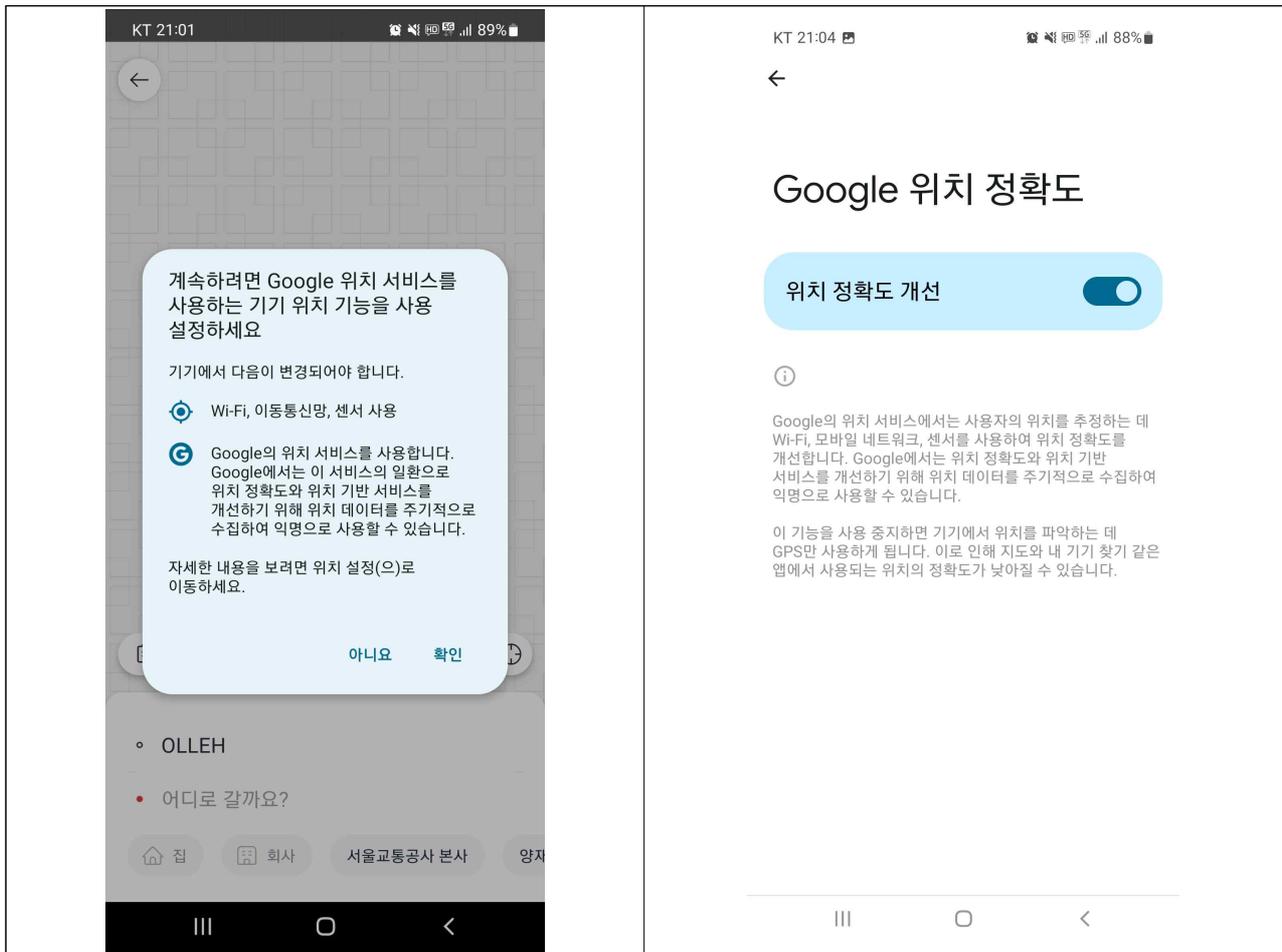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는 구매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와 유사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이 널리 알려진 ‘넛지(Nudge)’입니다. 이는 선택적 설계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하여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을 지칭합니다.

위에서 주장한 구글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계정 설정 방식은 다크 패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웹 및 앱 활동 기능의 기본값이 ‘활성화’로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설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기만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사용한 것입니다. 구글은 다크 패턴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기록 수집에 대하여 착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위치기록 수집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가 기기에서 구글 앱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위치정보 기능을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를 즉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간 동안 구글은 이용자에게 구글 지도, 구글 나우,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특정 구글 앱 및 서비스의 경우 위치기록 기능이 필요하거나 의존하고 있다고 설정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정 구글 앱 및 서비스는 이용자가 위치기록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와 구글 나우는 기본 기능을 작동하는데 이용자의 위치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용자가 위치기록을 비활성화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구글의 위와 같은 설명은 이용자가 구글의 앱 및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치기록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기기 설정을 통해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을 제한하려는 이용자도 다양한 다크 패턴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는 위치정보 ‘마스터 스위치’ 또는 앱별 위

치 권한 설정을 통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위치 설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러한 설정을 비활성화한 이용자에게 구글 앱을 사용할 때마다 위치 정보를 다시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기기에서 위치정보를 활성화하면, '구글 위치 정확도'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구글은 사용자 장치에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 소결론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표적 광고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수집, 이용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기록’, ‘웹 및 앱 활동’, ‘개인맞춤광고’의 세
가지 이상의 설정에 의하여 위치 정보를 제어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구
글은 이용자가 구글 계정에서 ‘위치 기록’을 비활성화하면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정
보를 수집·저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웹 및 앱 활동’
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웹 및 앱 활동’ 설정은 구글의 위치기록 수집, 저장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구글은 다크 패턴을 통해 위와 같이 이용자가 위치정보
를 제공함에 있어 착각하도록 유도하였고, 구글 앱을 사용할 때마다 위치 정보를 다시
활성화하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면서, 그 경우 자동으로 ‘구글 위치 정확
도’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에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표적 광고에 이용하였습니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글은 이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얻
지 않고, 이용자들이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을 제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구글은 그와 같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표적 광고를 통한 수익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노골적인 위법행위는
표적 광고시장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2022. 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중